

운영위원회 전원의 서면결의서

- 기관명 :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및
부설 자비손노인복지센터

상기 기관은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하여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로써 운영위원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2020년도 제1차 임시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운영위원 전원의 서면 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.

----- 결 의 사 항 -----

1. 상기 기관은 「취업규칙(직원 상시형 재택근무조항 신설) 및 2020학년도 신학기 온라인 개학에 따른 직원의 상시형 재택근무를 의결한다.

가. 상시형 재택근무 실시내역

- 1) 실시근거 : 고용노동부 코로나-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
- 2) 적용대상 : 유치원 및 초등학교(저학년) 학부모
- 3) 적용기간 : 2020. 04. 20.~ 휴관상황 종료시까지
- 4) 적용직원 : 총 6명(김지혜 선임사회복지사 외 5명)

나. 상시형 재택근무 실시방법

- 1) 상시 통신관리(전자결재 활용한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업무보고)로 성실근무
도모
- 2) 운영규정, 취업규칙,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철저한 근태관리 도모
- 3) 본인 연차 및 가족돌봄휴가 최대한 소진 후 재택근무 사용 독려
- 4) 처리방법 : 운영위원회 서면결의 후 결산서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제출

다. 상시형 재택근무 실시사유

- 1) 코로나-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‘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’ 방침에 적극 동참
- 2) 직원(저학년 학부모)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

- 붙임
1. 운영위원회 명부 1부.
 2. 고용노동부 코로나-19관련 재택근무 가이드 라인 1부.
 3. 교육부 온라인 개학 개요서 1부. 끝.
 4. 회신공문(춘천시) 1부.
 5. 발송공문(법인보고) 1부.
 6.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1부.
 7. 재택근무신청서 및 재택근무 해지 신청서 각 1부.
 8. 취업규칙 개정(안) 신규 대조표 1부.
 9.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및 접수증 각 1부. 끝.

2020. 04. .



춘천동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